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7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의 수계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2019.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927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은 주식회사 F에게 3,90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2. 6. 15.까지 연 38%,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F는 2013. 12. 31. 주식회사 A에게 E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A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83055호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4. 21. 위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9279호 지급명령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6.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고 2024. 2. 26. 흡수합병 등기를 마쳤다.

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83055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023. 5. 8.을 기준으로 22,059,352원이다.

마.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5.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H, 망인의 자녀인 E,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들 사이의 2019. 5.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1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20. 8. 4.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I은 위 고령등기소 2020. 8. 5. 접수 제786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고령등기소 2005. 4. 27. 접수 제6385호로 근저당권자를 J조합,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2019. 5. 7. 그 피담보채권액 10,0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2019. 6.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23. 9. 30. 기준 63,10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E에 대한 확정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E에 대한 확정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1979. 9. 25. 경북 고령군 L 답 638㎡를 당시 만 14세이던 E에게 증여하여 E 명의로 취득하게 하였고 E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회 대출을 받고 2011. 5. 24. 위 부동산을 77,2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소비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이 위 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점, 피고가 2019.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E에게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만 14세 남짓이던 1979. 9. 25. 경북 고령군 L 답 638㎡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수회에 걸쳐 위 부동산에 관하여 E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1. 5.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M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거래가액이 7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만 14세의 나이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E이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사전증여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E이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사전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2019.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E에게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E에게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E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은 E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써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받은 이익은 일치하게 된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체결 이후인 2020. 8. 4.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I이 2020.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액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9. 30. 기준 시가는 63,106,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에 따른 공동담보가액 및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15,173,142원(= 53,106,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63,106,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10,000,000원) × E의 상속지분 2/7,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는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22,059,352원을 미달하므로, 결국 15,173,142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위 가액배상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571,42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별지